

제19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 조와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9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 8월 18일 (금)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53-73 (주)엘엠에스 본사 식당
3. 회의목적사항

《결의 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별첨 참조)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후보자	유지범 (1959-09-06)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	상장회사 협의회	無	無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제3-1호 후보자	정무권 (1964-06-16)	국민대 경영대 교수	이사회	無	無
제3-2호 후보자	함수용 (1971-12-09)	한올회계법인 이사	이사회	한올회계법인 (세무조정거 래외)	無
제3-3호 후보자	유지범 (1959-09-06)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	이사회	無	無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7년 8월 11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시행령의 종전 규정 제3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를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Shadow Voting)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다.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팩시밀리(02)3774-3244~5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7년 8월 18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엘엠에스의 제19기 임시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주민등록번호			
의결권 주식수			

2017년 8월 일

실질주주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7년 8월 8일 ~ 2017년 8월 17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주차가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31일

주식회사 엘엠에스

대표이사 조성민 (직인생략)

▣ 별첨: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변경	변경 목적
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 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 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 밖의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 밖의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표기 변경
제 38 조 (이사의 의무)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이사의 의무)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 회나 감사위원회 위원 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표기 변경
제40조의1 (이사회회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 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의1 (이사회회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 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감사관련권 삭제
제42조(이사회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감사관련권 삭제
신설	제42조의 1(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회사 경영상 필요한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 신설
제6장 감사	제6장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표기 변경
제47조(감사의 수) 회사의 감사는 1인으로 한다.	제47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정관 제42조의 1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③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기존 감사규정 삭제 및 감사위원회 규정 신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제 48 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8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기존 감사규정 삭제 및 감사위원회 규정 신설
제 49 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 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9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기존 감사규정 삭제 및 감사위원회 규정 신설
제 50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8조 제3항 및 제4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기존 감사규정 삭제
제 51 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삭제	기존 감사규정 삭제
제 52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삭제	기존 감사규정

<p>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p>		삭제
<p>제54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p> <p>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대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 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p>	<p>제54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p> <p>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대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회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 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p>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표기 변경